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3. 7.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98년도 정부의 행정구조 조정당시 지방행정의 생산성제고 목적으로 5개 보건진료소가 폐지되었으나, 농촌 오지지역은 고령화 사회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와 무의탁 거동불편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현지에서 환자와 밀착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진료소활성화 계획에 부응하고, 본 군 오지지역의 의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폐쇄된 보건진료소 중 3개 보건진료소를 복원코자 함.

2. 주요골자(동 조례 제3장 제4조 제3항 별표1)

○보건진료소 8개소 ⇒ 11개소 증(3개소 복원)

- 폐지된 진료소 : 명포, 마월, 오천, 봉학, 자산진료소
- 복 원 진료소 : 명포, 마월, 봉학진료소

※ 복원기준

① 관련법규(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적합한 진료소

- 의료취약지역 인구 500인 이상 ~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관할구역기준 설치

② 주민의 수혜도(인구 및 환자수)가 높고 자체진료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한 진료소

③ 보건지소와 거리 고려 및 기존건물·장비 이용이 가능한 진료소

3. 내 용 : 붙 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5. 참고자료

가.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03. 4. 1 ~ 4.30(20일간)

2) 예고방법 : 성주군공보, 군청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면게시판 게시, 홈페이지 게재

3) 예고결과 : 의견없음

나. 관련법령

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5조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 보건진료원의 업무)

3)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제17조 보건진료소의 설치)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성주군 보 건 소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36-1번지	성주군 일원
〃 선남지소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697-3번지	선남면 일원
〃 용암지소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612-6번지	용암면 일원
〃 수륜지소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116-4번지	수륜면 일원
〃 가천지소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422-4번지	가천면 일원
〃 금수지소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 106번지	금수면 일원
〃 대가지소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733-4번지	대가면 일원
〃 벽진지소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810번지	벽진면 일원
〃 초전지소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710-37번지	초전면 일원
〃 월항지소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39-3번지	월항면 일원
선남면 도흥보건진료소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323번지	도흥1,2,3리, 도성리, 용신1,2,3리
선남면 문방보건진료소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520-1번지	문방1,2,3리, 오도리, 대산3리, 소학1,2리
선남면 명포보건진료소	성주군 선남면 명포리 620-1번지	명포1,2리, 장학리, 유서1,2리
용암면 마월보건진료소	성주군 용암면 마월리 125-4번지	마월1,2리, 증거리, 계상리, 대봉1,2리
수륜면 남은보건진료소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162번지	남은1,2리, 보월1,2리,작은리
금수면 무학보건진료소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1455번지	후평1,2리,봉두1,2리, 무학1,2리,영천리
대가면 용흥보건진료소	성주군 대가면 용흥리 743-1번지	용흥1,2,3리, 흥산1,2리,옥성2리
벽진면 봉학보건진료소	성주군 벽진면 봉학리 521번지	외기2,3리, 봉학1,2,3리, 용암1,2리
초전면 소성보건진료소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478번지	소성리, 월곡1,2리, 용봉1,2리
초전면 용성보건진료소	성주군 초전면 용성리 408번지	용성1,2,3리, 문덕2리,칠선1리
월항면 장산보건진료소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347번지	장산1,2리,수죽1,2리, 지방리, 인촌1,2리,어산리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관련)

명 칭	소재지	관할구역
(생 략)		
선남면도홍 보건진료소	선남면 도홍1리	도홍1,2,3리, 도성리, 용신1,2,3리
선남면문방 보건진료소	선남면 문방1리	문방1,2,3리, 오도리, 대산3리, 소학1,2리
〈신설〉		
〈신설〉		
수륜면남은 보건진료소	수륜면 남은2리	남은1,2리, 보월1,2리,작은리
금수면무학 보건진료소	금수면 무학2리	후평1,2리,봉두1,2리, 무학1,2리,영천리
대가면용흥 보건진료소	대가면 용흥2리	용흥1,2,3리, 흥산1,2리,옥성2리
〈신설〉		
초전면소성 보건진료소	초전면 소성리	소성리, 월곡1,2리, 용봉1,2리
초전면용성 보건진료소	초전면 용성1리	용성1,2,3리, 문덕2리,칠선1리
월항면장산 보건진료소	월항면 장산1리	장산1,2리,수죽1,2리, 지방리, 인촌1,2리, 어산리

개 정 안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관련)

명 칭	소재지	관할구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선남면명포 보건진료소	**선남면 명포2리**	**명포1,2리, 장학리, 유서1,2리**
용암면마월 보건진료소	**용암면 마월1리**	**마월1,2리, 중거리, 계상리, 대봉1,2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벽진면봉학 보건진료소	**벽진면 봉학1리**	**외기2,3리, 봉학1,2,3리, 용암1,2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800호〕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

제15조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시장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안의 도서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②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3.12 대통령령 제17939호〕

제14조 (보건진료원의 업무)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6·1〉

1.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
2. 환자의 이송
3.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지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7. 예방접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보건진료원은 제1항 각호의 의료행위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92·6·1〉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보건진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3.12 보건복지부령 제00241호〕

제17조 (보건진료소의 설치)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이상(도서지역은 300인이상) 5천인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의료장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군수(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경우의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